

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085호
- 다. 제출일자: 2016. 4. 7.
- 라. 회부일자: 2016. 4.14.

2. 제안 사유

- 본 조례안은 서울의 취약한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의 거점인 “서울재활용플라자”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5조)
 - 서울재활용플라자의 설치목적, 용어정의, 기능 등
- 나. 서울재활용플라자 사용료,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 - 시설 사용료(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) 등
- 다. 서울재활용플라자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~제14조)
 - 관리·운영 위탁사무, 관리·운영 지원

- 라.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·운영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8조)
 - 민관 거버넌스 “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” 설치·운영 등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'16년 79백만원 ※ '17년 2,306백만원

다. 합 의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2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공공 갈등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협의완료
- (4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의견제시

➡ 제시의견 반영(제15조~제18조 운영협의회 설치, 운영)

- 운영협의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·운영
 -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, 종료와 함께 자동해산
 -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함
 - 회의는 필요시 시장이 소집

(5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협의완료(원안동의)

(6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의견제시

➡ 제시의견 반영(제16조 운영협의회 구성)

- 협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(2016. 2. 4. ~ 2. 24.) 결과 : 별도 의견없음
- (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별첨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서울의 취약한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문화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“서울재활용플라자”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1호에서 시설의 명칭을 “서울재활용플라자(이하 “재활용플라자”라 함)”로 정한 것은 시민응모 및 시민선호도조사,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외래어인 업사이클(upcycle)의 우리말 순화어¹⁾가 “재활용”이라는 점에서 시설의 명칭에 재활용보다 상위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.
- 그러나 제2호에서는 외래어인 업사이클링(upcycling)²⁾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“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또한 “재활용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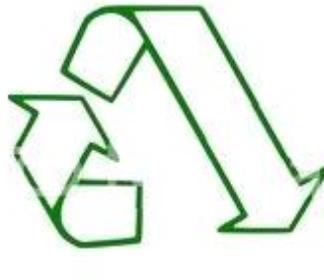
1) 국립국어원

2) 업사이클링이란 용어는 1994년 독일의 리너 필츠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자원이 나 쓸모 없는 폐품을 원재료를 분해하는 과정없이 잘 활용해서 원래보다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으로 기계적, 화학적 공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재료로 바꾸어 사용하는 다운사이클링과는 차별되는 용어임

- 재활용 :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
- 재활용 : 폐기물을 재사용, 재생이용, 에너지회수, 연료로 사용하는 것
- 재생이용 : 재활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것
- 재사용 : 재활용품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는 것



Recycle



Downcycle



Upcycle

2) 재활용플라자의 기능 및 내부 시설(안 제3조~제4조)

- 안 제3조는 재활용플라자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4조는 재활용플라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, 공간을 규정하고 있음.

3) 시설 사용료, 입주자 지원 등(안 제6조~안 제12조)

- 재활용플라자내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³⁾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,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1회에 한해 연장하되 총 사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제1항⁴⁾에서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.

3)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음

4)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4) 관리운영의 위탁(안 제13조~안 제14조)

- 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조례”라 함)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새활용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위탁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(안 제13조 제2항).
- 민간위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같은 조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어, 과도한 재량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조례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5)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4조~안 제18조)

- 새활용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협의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새활용플라자가 조성되는 초기 단계이니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.
 -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안 제1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 회의 소집권한을 위원장 또는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6) 종합의견

- 서울시의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재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새활용플라자의 조성 및 운영·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 의의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, 시설의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,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점, 협의회의 상설운영 여부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관 계 법 령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7.23., 2011.4.28., 2014.1.21.>

1. "자원순환"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·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재활용가능자원"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[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(廢熱)을 포함하되,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3. "부산물"이란 제품의 제조·가공·수리·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·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.
4. "지정부산물"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.
5. "재활용"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.
6. "재사용"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7. "재생이용"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(原料物質)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「폐기물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폐기물"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- 2.~6. (생략)
7. "재활용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나. 폐기물로부터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